

의안번호	2217209
의 퇴 인	정희용의원
회 답 일	2026.3.30.
추계번호	26E1212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근로소득공제 확대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□ 개정안에 따라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는 다음과 같음

- 재정수입 감소는 2027년 1조 9,419억원, 2031년 3조 478억원 등 2027~2031년 5년간 총 14조 693억원(연평균 2조 8,139억원)으로 예상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근로소득공제 확대 (안 제47조제1항)	-19,419	-33,443	-28,092	-29,261	-30,478	-140,693	-28,139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											
1	안 제47조제1항 (근로소득공제)	○ 근로소득공제 확대 － (현행) 공제한도 2,000만원												
		<table><tr><th>총급여액</th><th>공제액</th></tr><tr><td>500만원 이하</td><td>총급여액의 70%</td></tr><tr><td>500만원 ~ 1,500만원</td><td>350만원 + 500만원 초과분의 40%</td></tr><tr><td>1,500만원 ~ 4,500만원</td><td>750만원 + 1,500만원 초과분의 15%</td></tr><tr><td>4,500만원 ~ 1억원</td><td>1,200만원 + 4,500만원 초과분의 5%</td></tr><tr><td>1억원 초과</td><td>1,475만원 + 1억원 초과분의 2%</td></tr></table>	총급여액	공제액	500만원 이하	총급여액의 70%	500만원 ~ 1,500만원	350만원 + 500만원 초과분의 40%	1,500만원 ~ 4,500만원	750만원 + 1,500만원 초과분의 15%	4,500만원 ~ 1억원	1,200만원 + 4,500만원 초과분의 5%	1억원 초과	1,475만원 + 1억원 초과분의 2%
		총급여액	공제액											
		500만원 이하	총급여액의 70%											
		500만원 ~ 1,500만원	350만원 + 500만원 초과분의 40%											
		1,500만원 ~ 4,500만원	750만원 + 1,500만원 초과분의 15%											
		4,500만원 ~ 1억원	1,200만원 + 4,500만원 초과분의 5%											
		1억원 초과	1,475만원 + 1억원 초과분의 2%											
		－ (개정안) 공제한도 3,000만원												
		<table><tr><th>총급여액</th><th>공제액</th></tr><tr><td>500만원 이하</td><td>총급여액의 80%</td></tr><tr><td>500만원 ~ 1,500만원</td><td>450만원 + 500만원 초과분의 40%</td></tr><tr><td>1,500만원 ~ 4,500만원</td><td>850만원 + 1,500만원 초과분의 15%</td></tr><tr><td>4,500만원 ~ 1억원</td><td>1,300만원 + 4,500만원 초과분의 5%</td></tr><tr><td>1억원 초과</td><td>1,575만원 + 1억원 초과분의 2%</td></tr></table>	총급여액	공제액	500만원 이하	총급여액의 80%	500만원 ~ 1,500만원	450만원 + 500만원 초과분의 40%	1,500만원 ~ 4,500만원	850만원 + 1,500만원 초과분의 15%	4,500만원 ~ 1억원	1,300만원 + 4,500만원 초과분의 5%	1억원 초과	1,575만원 + 1억원 초과분의 2%
		총급여액	공제액											
		500만원 이하	총급여액의 80%											
500만원 ~ 1,500만원	450만원 + 500만원 초과분의 40%													
1,500만원 ~ 4,500만원	850만원 + 1,500만원 초과분의 15%													
4,500만원 ~ 1억원	1,300만원 + 4,500만원 초과분의 5%													
1억원 초과	1,575만원 + 1억원 초과분의 2%												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47조제1항 (근로소득공제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의 부칙을 반영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,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 - 2027년 세수효과는 간이세액표 개정('27.2월) 이후 원천징수분이 납부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4월부터 세수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- 개정안으로 인한 근로소득공제금액 변동에 따른 산출세액의 변화를 세수효과로 전제
 - 근로소득공제 확대에 따른 1인당 산출세액의 변화가 크지 않아 산출세액의 변동으로 인한 세액공제액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가정
 - 결정세액이 있는 총급여 3억원 이하 근로자(전체의 99.5%)의 1인당 산출세액 변동 규모는 약 6만~48만원 수준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(1) 공제 현황

- 2024년 근로소득자 중 결정세액 있는 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인원 및 규모는 각각 1,423만명, 167조원으로 2022~2024년(최근 3년) 동안 각각 연평균 3.3%, 4.2% 증가

[표 4] 근로소득공제 규모 추이: 귀속연도 기준

(단위: 천명, 억원, %)

	2021	2022	2023	2024	연평균
적용인원	12,916	13,629	13,959	14,228	13,939
(증가율)	(5.5%)	(5.5%)	(2.4%)	(1.9%)	(3.3%)
공제금액	1,473,776	1,569,727	1,618,563	1,665,493	1,617,928
(증가율)	(6.5%)	(6.5%)	(3.1%)	(2.9%)	(4.2%)

주: 결정세액 있는 자 기준

자료: 국세청, 「국세통계연보」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 방법

- 개정안에 따른 총급여액 규모별 1인당 근로소득공제 변화분에 한계세율을 곱해 산출세액 변화분을 산출한 후, 해당 총급여구간별 인원을 곱한 값을 합산하여 총 세수감소분 추계
 - 국세통계연보의 총급여규모별 근로소득공제 현황 자료 활용
 - 결정세액 있는 자의 총급여규모별 1인당 총급여액에 현행 및 개정안의 근로소득공제 산정식(공제한도 포함)을 적용해 현행 및 개정안의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산출한 다음, 개정안에 따른 근로소득공제금액 변화분에 소득구간별 한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 변화분 도출
 - － 총급여규모별 1인당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해당 과세표준에 대응하는 한계세율 적용
 - － 개정안에 따라 1인당 근로소득공제금액이 증가하면 소득세 결정세액이 감소하게 되므로 근로소득공제 적용 인원 중 결정세액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추계

(3) 추계 결과

- 전체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4년 귀속 기준 2조 2,91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5] 근로소득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(근로소득세, 2024년 기준)

(단위: 명, 백만원)

총급여액 규모	국세통계연보		1인당 근로소득공제금액		1인당 근로소득공제 변화분	한계세율	1인당 산출세액 변화분 ³⁾	세수효과 (억원)
	근로소득공제 인원 ¹⁾	1인당 총급여액	현행 ²⁾	개정안 ²⁾				
	A	B	C0	C1	D=C1-C0	E	F=-(D×E)	G=F×A
합계	14,228,304	58.3	-	-	-	-	-	-22,912
1천만 이하	-	6.0	-	-	-	-	-	-
1.5천만 이하	164,304	14.3	7.2	8.2	1.0	6%	-0.01	-99
2천만 이하	762,045	17.7	7.9	8.9	1.0	6%	-0.06	-457
3천만 이하	2,678,099	25.4	9.1	10.1	1.0	6%	-0.06	-1,607
4천만 이하	2,423,013	34.9	10.5	11.5	1.0	6%	-0.15	-3,635
4.5천만 이하	1,044,162	42.5	11.6	12.6	1.0	15%	-0.15	-1,566
5천만 이하	924,483	47.5	12.1	13.1	1.0	15%	-0.15	-1,387
6천만 이하	1,498,310	54.9	12.5	13.5	1.0	15%	-0.15	-2,247
8천만 이하	1,986,847	69.1	13.2	14.2	1.0	15%	-0.15	-2,980
1억 이하	1,208,775	89.1	14.2	15.2	1.0	15%	-0.24	-2,901
2억 이하	1,344,642	130.3	15.4	16.4	1.0	24%	-0.35	-4,706
3억 이하	122,568	237.2	17.5	18.5	1.0	35%	-0.38	-466
5억 이하	49,763	373.0	20.0	21.2	1.2	38%	-0.48	-241
10억 이하	16,419	661.3	20.0	27.0	7.0	40%	-2.93	-481
10억 초과	4,874	1974.3	20.0	30.0	10.0	42%	-4.50	-219

주: 1)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소득공제 신청자 수

2) 현행 1인당 총급여액에 현행 및 개정안의 근로소득공제 산정식을 적용하여 추정

3) 총급여액규모별 1인당 산출세액 감소분이 현행 1인당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,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반영하여 산출
자료: 국세청, 「2025 국세통계연보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향후 5년간 세수효과는 최근 3년간 근로소득공제금액의 연평균 증가율 (4.2%)을 따를 것으로 가정
- 소득 발생연도 기준으로 세수효과를 합산할 경우 소득세수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14조 693억원(연평균 2조 8,13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6] 개정안에 따른 세목별 재정수입 변화(소득 발생연도 기준)

(단위: 억원)

세목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근로소득세	-25,892	-26,970	-28,092	-29,261	-30,478	-140,693	-28,139

- 소득세 징주시점을 반영하여 세수효과를 합산할 경우 2027년 1조 9,419 억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14조 693억원(연평균 2조 8,139 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 - 2027년 2월 간이세액표가 개정되어 3월 원천징수분이 납부되는 4월부터 세수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에 따라, 2027년에는 당해연도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효과의 9/12(9개월분)가 반영되고, 2028년에는 2027년 세수효과의 3/12(3개월분)과 당해연도 세수효과가 동시에 발생

[표 7] 개정안에 따른 세목별 재정수입 변화(징수 기준)

(단위: 억원)

세목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근로소득세	-19,419	-33,443	-28,092	-29,261	-30,478	-140,693	-28,139

IV. 부대의견

- 법률안의 근로소득공제 산식 개정 과정에서의 오류를 임의로 수정하여 비용추계를 작성하였으므로, 법률안에 대한 수정 검토가 필요함

- 본 비용추계는 공제액 산식상 첫 구간의 오류를 수정하는 것을 전제로 산출하였으며, 이에 따라 후속 구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수정 없이 적용함

[표 8] 법률안 임의 수정 사항

총급여액	공제액		
	현행	개정안	개정안 수정
500만원 이하	총급여액의 <u>70%</u>	총급여액의 <u>80%</u>	총급여액의 <u>90%</u>

- 다만, 첫 구간 산식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전체 구간에 대한 산식 재조정이 필요하므로, 추계 결과는 산식의 수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박지원	박연서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지원	02-6788-4662	jwpark1209@assembly.go.kr